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36조)
-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함(안 3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00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0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출시설의”를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23.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24. 제44조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또는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설치 기준 등에 미달한 경우

제3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

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7. (생략) ② ~ ⑥ (생략)</p>	<p><u>출하는 시설</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6914